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9월 18일
-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복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협력체계 및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책무)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협의체 구성 및운영)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영등포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질환자 치료 및 회복지원,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6조(사업 추진)는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는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행정입원 조치를 취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지정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는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9조(지원)는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상

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회복 지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며 향후 국가·광역자치단체와 연계된 위기대응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
----------	----

발의년월일: 2022년 9월

발의자: 최봉희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2022. 9. 8. ~ 9.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 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영등포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2. 영등포경찰서
3. 영등포소방서
4.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자치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

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